

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(1557)

제안설명

-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!
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우 미 경 의원입니다.

-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-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이 개정안은 첫째, 경관심의 대상물 중 공공건축물에 대한 시 또는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현재의 ‘총 공사비(5억원)’ 기준에서 ‘층수(5층)’ 기준으로 변경하고, 둘째, 경관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지정하는 경관관련 위원회에 ‘도시공원위원회’를 추가하여 도시공원내 건축물을 경관심의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.

- 먼저,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변경은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시 건축위원회 심의건수 집중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을 해소하고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자율권을 확대하려는 취지이며, 두 번째, 경관관련 위원회 추가는 도시공원내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현재 건축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나,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공원내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어 중복 심의 방지 및 경관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 이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-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